W o r k p l a c e P a n e l S u r v e y

Workplace Panel Survey

User's Guide

배포용

WPS 사업체패널조사
Workplace Panel Survey

User's Guide

CONTENTS

Ⅰ. 사업체패널조사(WPS 2007) 소개

1. 개요 …… 1

1.1 목적 및 필요성 • 1

1.2 조사구조와 조사주기 • 3

1.3 조사 대상 및 주요설문 내용 • 5

1.4 조사 진행과정 • 9

1.5 데이터 배포 • 10

2. 표본설계 …… 11

2.1 표본설계 개요 • 11

2.2 표본설계 기본원칙 • 12

2.3 조사모집단 결정 • 12

2.4 층화 및 표본추출 • 16

3. 가중치 산정 …… 19

3.1 표본가중치 • 19

3.2 패널가중치 • 23

3.3 추정방법 • 24

4. 실사 진행 및 조사결과 …… 25

4.1 실사 진행 • 25

4.2 조사결과 • 27

User's Guide

CONTENTS

Ⅱ. 사업체패널조사(WPS 2007) 데이터 설명

1. 데이터 이용방법 설명 ····· 31
1.1 데이터 이용 Tip • 31
1.2 Key 변수 • 37
1.3 그 외의 Key 변수 • 38

2. 주제별 가이드 ····· 43
2.1 기본정보 ····· 43
EP. 근로자 현황 • 43
FP. 재무 현황 • 47
2.2 인사담당자 응답용 설문 ····· 49
A. 사업장 특성 • 49
B. 고용현황 및 고용관리 • 50
C. 보상 및 평가 • 51
D.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 55
E. 인적자원개발 • 57
F. 기업복지와 산업재해 • 58
IR. 비정규직법 관련 부가조사 • 60
H. 작업장혁신 • 61
Z. 공공부문(추가설문) • 61
2.3 노무담당자 응답용 설문 ····· 62
M. 노사관계(유노조 사업장) • 62
N. 노사관계(무노조 사업장) • 64
2.4 근로자대표 응답용 설문 ····· 65
P. 노사관계(노동조합 대표 응답용) • 65
Q. 노사관계(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응답용) • 65

User's Guide

Ⅰ. 사업체패널조사(WPS) 소개

Workplace Panel Survey

1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수요와 고용구조 및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체계, 노사관계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체단위 실태조사를 패널화하여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 사업체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사업체를 대표하는 표본에 대해 주기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및 국제화 시대의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우리 기업의 노동수요 및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가 본 자료를 통해 정부의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다.

□ 사업체패널조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사업체 단위의 고용구조 및 노동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급변한 기업의 노동수요 구조 및 변화를 파악하고, 임시·일용직,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여 기업의 고용유연화전략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의 흐름과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금체계, 평가 및 보상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구조 및 특성 과 한국형 노사관계의 성격, 특징, 구조에 관해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및 투자실태 파악이다. 교육훈련과 기업내 숙련 형성 등 인적자본개발과 투자의 실태 및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체 조사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사업체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간 비교연구뿐 아니라 학제간 연구의 폭을 증대시켜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림1] 사업체패널조사의 목적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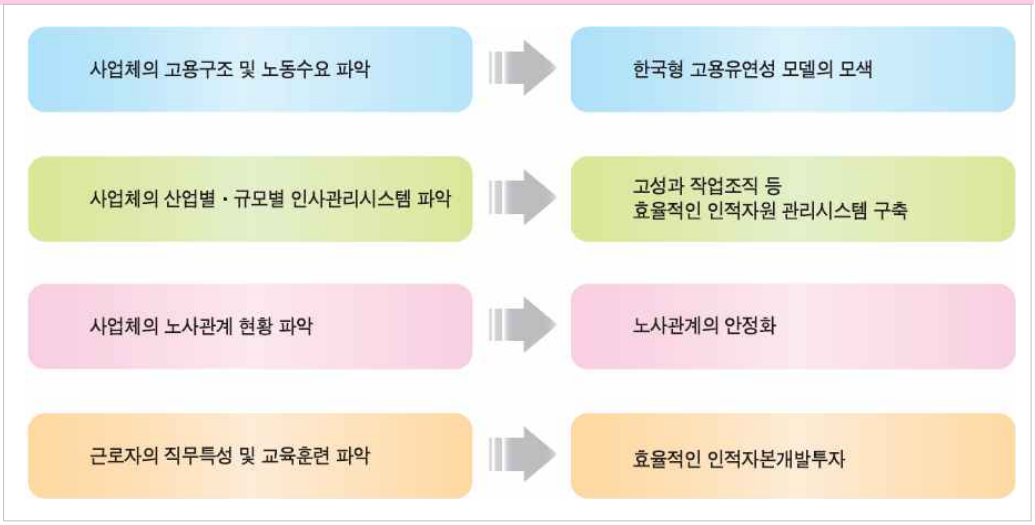

2 조사구조와 조사주기

□ 사업체패널조사는 WPS 2005를 시작으로 2년에 1회씩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본조사라고 한다. 이러한 본조사는 인사담당자 응답용, 노사관계업무 담당자(또는 노사협의회업무 담당자) 응답용, 노동조합 대표(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응답용으로 구분된다([그림 2] 참조).

□ WPS 2005는 민간부분 약 1,600개와 공공부문 약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공공부문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조사[1]를 실시하였다.

□ WPS 2005 조사 대상 중 WPS 2007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1,749개이다. 이 가운데 결번 또는 휴업/폐업으로 인해 조사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장은 115개이다. 이를 제외한 2008년 사업체패널 대상 유효 표본수는 1,634개 사업장이다. 이 가운데 컨택이 되었으나 진행을 하지 못한 71개 사업장과 조사를 거절한 148개 사업장을 제외한 최종 조사완료 사업장은 1,415개로 2008년 사업체패널 최종 패널유지율은 86.5% 이다.

□ WPS 2007에서는 최종 목표 진행 사업장 가운데 패널이 유지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체를 하였으며, 320개 사업장을 신규로 패널 조사가 진행되었다.

□ WPS 2007은 최종적으로 민간부문 1,610개와 공공부문 1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비정규직 관련 설문을 추가하였고, 작업장 혁신에 관련한 설문을 본조사에 추가하였다.

□ WPS 2005 조사 대상 중 WPS 2009로 선정된 사업장은 1,634개이다. 이 가운데 결번 또는 휴업/폐업으로 인해 조사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장은 50개이다. 이를 제외한 WPS 2009 유효 표본수는 1,578개 사업장이다. 이 가운데 컨택이 되었으나 진행을 하지 못한 70개 사업장과 조사를 거절한 285개 사업장을 제외한 최종 조사완료 사업장은 1,229개로 WPS 2009의 패널유지율은 77.6% 이다.

---

1)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 WPS 2009는 진행 사업장 가운데 패널이 유지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WPS 2007의 대체 사업장과 299개 신규 패널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 WPS 2009는 최종적으로 민간부문 1,626개와 공공부문 1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때, 2008년에 부가조사한 비정규직 법안과 작업장 혁신에 관련한 설문 중 일부 항목은 본조사 항목으로 추가되어 조사되었다.

[그림2] 사업체패널조사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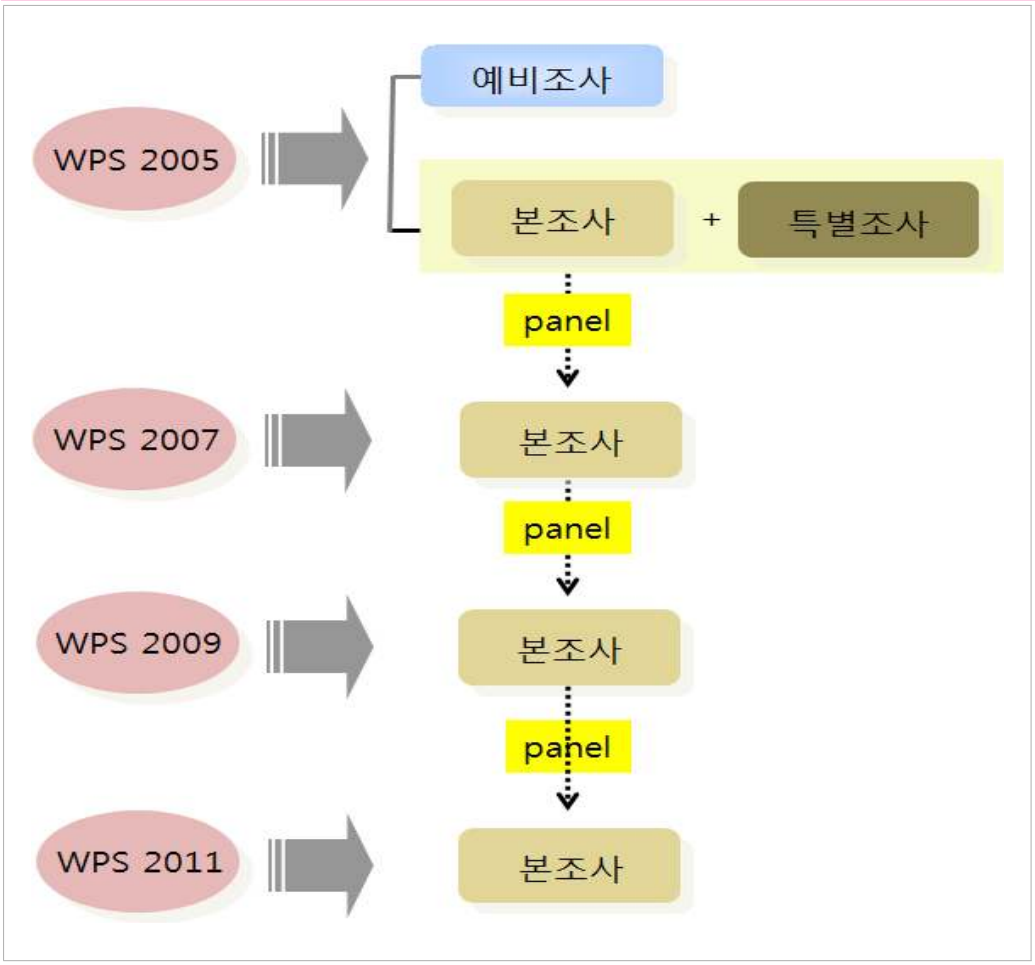

3 조사 대상 및 주요설문 내용

□ 인사담당자 응답용 설문은 일반적인 사업체 특성(기업의 특성 및 조직변화, 사업체의 특성 및 환경, 혁신・기술・정보화, 하도급 관계, 성과변수), 고용현황 및 고용관리(채용 및 이직 관리, 사업체 유연성, 비정규직 근로자), 보상 및 평가(인사고과/근무평정, 임금체계, 연봉제, 성과배분, 임금수준 및 인상, 기업복지),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인사관리 전반 및 인사부서에 관한 사항, 작업조직, 근로시간, 커뮤니케이션・정보공유・개인별 고충처리, 공정한 처우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 경력개발), 기업복지 및 산업재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08년 조사에서는 2007년의 주요 이슈인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관리 관련 설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작업장 혁신, 그리고 공공부문 사업장의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부가조사까지 인사담당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중 일부 문항은 2010년 본조사로 흡수되었다.

□ 노사관계업무 담당자 응답용 설문은 노무부서 현황, 노동조합 현황, 임금 및 단체교섭, 노동쟁의, 경영참여, 노사협의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 응답하였다. 사업체조사의 노사협의회업무 담당자 응답용 설문은 노무부서 현황, 노사관계 일반 현황, 노사협의회 현황, 노사협의회 운영, 경영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체에서 응답하였다.

□ 노동조합 대표 응답용 설문은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 선거 및 의사결정구조, 노동조합 일상활동, 교섭구조 및 교섭과정, 노동조합의 역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 응답하였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응답용 설문은 근로자측 의사결정 구조, 노사협의회 운영, 경영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체에서 응답하였다.

[표 1] WPS 2011의 인사담당자 CAPI 설문의 문항수 변화

		2005		2007		2009		2011	
전 체		250		514		404		370	
A. 사업장 특성	0. 기본사항	4	33	4	48	4	48	4	48
	1. 기업의 특성 및 조직변화	8		18		18		18	
	2. 사업장의 특성 및 환경	12		18		18		18	
	3. 성과변수	9		8		8		8	
B. 고용현황 및 고용관리	1. 고용관리	13	40	13	128	13	82	18	71
	2. 사업장 유연성	15		18		18		23	
	3. 비정규직 근로자	12		25		25		24	
	4. 기간제 근로자 활용방식의 변화			6		4		6	
	5.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			46		12			
	6. 정규직 전환방식과 결과			15		8			
	7. 차별시정조치			5		2			
C. 보상 및 평가	1.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	18	65	27	75	14	63	12	53
	2. 임금체계	18		13		14		5	
	3. 성과배분	19		22		22		21	
	4. 임금수준 및 인상	10		13		13		14	
D.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1. 인사관리 전반	20	73	27	74	29	155	24	143
	2. 작업조직	29		27		37		29	
	3. 작업장 혁신					36		35	
	4. 숙련개발					11			
	5. 근로시간	9		8		30		43	
	6.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유	10		7		7		7	
	7. 공정한 처우 및 모성보호	5		5		5		5	
E. 인적자원개발	1. 교육훈련	12	32	17	22	17	22	15	22
	2. 경력개발	20		5		5		9	
IR. 비정규직법	4. 간접고용 및 외주화			4	4			4	4
H. 작업장 혁신	1. 작업장 혁신 전반			37	129				
	2. 근로시간			3					
	3. 임금			23					
	4. 작업설계 및 작업조직			14					
	5. 품질관리			7					
	6. 숙련개발			33					
	7. 작업장 혁신의 저해요인 및 수행방식			12					
Z. 공공부문(추가 설문)				27	27	27	27	26	26
F. 응답자 정보		7	7	7	7	7	7	7	7

[표 2] WPS 2011의 노사관계 담당자 CAPI 설문의 문항수 변화

		2005	2007	2009	2011
M. 노사관계 (유노조 사업장)	전 체	131	139	139	136
	0. 기본사항	6	1	1	1
	1. 노무부서 현황	4	9	9	9
	2. 노동조합 현황	20	21	21	22
	3. 임금 및 단체교섭	26	31	31	31
	4. 노동쟁의	23	16	16	16
	5. 경영참여	10	17	17	17
	6.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16	16	16	16
	7. 기업복지 및 산업재해	18	20	20	16
	8. 응답자 정보	8	8	8	8
N. 노사관계 (무노조 사업장)	전 체	100	112	112	96
	0. 기본사항	7	5	5	5
	1. 노무부서 현황	5	12	12	12
	2. 노사관계 일반 현황	10			
	3. 노사협의회 현황	11	15	15	10
	4. 노사협의회 운영	29	30	30	23
	5. 경영참여	6	15	15	15
	6. 고충처리	8	9	9	9
	7. 기업복지 및 산업재해	18	20	20	16
	8. 응답자 정보	6	6	6	6

[표 3] WPS 2011의 노사관계 담당자 CAPI 설문의 문항수 변화

		2005	2007	2009	2011
P. 노사관계 (노동조합 대표)	전 체	114	115	109	82
	0. 기본사항	4	2	2	2
	1. 노동조합 현황	22	25	25	11
	2. 노동조합 선거 및 의사결정 구조	20	21	21	15
	3. 노동조합 일상활동	12	21	21	21
	4. 교섭구조 및 교섭과정	22	19	19	12
	5. 노동조합의 역사	29			
	6. 작업장 혁신		22	16	16
	7. 응답자 정보	5	5	5	
Q.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전 체	45	27	23	23
	0. 기본사항	7			
	1. 근로자측 의사결정 구조	9	16	16	16
	2. 노사협의회 운영	19	3	3	3
	3. 경영참여	6			
	4. 작업장 혁신		4		4
	5. 응답자 정보	4	4	4	4

[그림3] 사업체패널조사의 구조

4 조사 진행과정

□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전 컨택, 우편물 발송, 재무현황 및 근로자현황 조사표 작성, 사업장 방문 면접조사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 사전 컨택은 훈련받은 컨택원이 표본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사업장명, 업종, 주소 등 사업장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우편물 및 조사표를 수령하고 면접조사에 응답할 담당자를 찾는 단계이다. 패널화가 되어있으므로 지난 조사 담당자와 통화를 걸어 업무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다시 면접조사에 응답할 담당자를 찾는다.

- 우편물 발송 단계에서는 사전 컨택을 통해 확인된 담당자에게 사업체패널조사를 소개하는 브로셔,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재무현황 및 근로자현황 조사표를 발송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 소개 브로셔는 조사의 목적, 방법, 구성, 내용, 참여의의, 결과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응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비쥬얼하게 제작하였다.

- 재무현황 및 근로자현황 조사표의 경우 방문 면접이 진행되기 전에 응답을 완료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재무현황 및 근로자현황 조사표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팩스로 발송하여 수거하거나, 우편물 발송 단계에서 발송한 조사표를 면접원이 직접 수거하기도 하였다.

- 사전 컨택을 통해 응답자가 선정되고 재무현황 및 근로자현황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면 면접원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네덜란드 통계청이 개발한 Blaise 시스템을 활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면접원이 조사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설문을 응답하도록 하는 개별 면접법을 의미한다. 면접원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CAPI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수거된 재무현황 및 근로자현황 조사표의 응답을 CAPI용 노트북 컴퓨터에 미리 입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CAPI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노사관계담당자, 근로자대표에게 각각 진행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그림 4] 참조).

[그림4] 사업체패널조사 진행단계

5 데이터 배포

데이터, 설문지, 코드북, 유저가이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논문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li.re.kr/wps/ko/main/main.jsp)에 사용자 등록만 하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WPS 2005 데이터부터 WPS 2011 데이터까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Workplace Panel Survey

2 표본설계

1 표본설계 개요

사업체패널은 2002년도에 1차 패널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3차년도까지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1차년도의 조사대상은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분을 제외한 전 산업(단,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교육기관은 제외)에 대하여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체 사업체로 하였다. 이후 2차년도 조사부터는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였고, 3차년도 조사부터는 사업체 규모별로 시장 진입과 시장 퇴장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표본설계를 달리하였다. 표본 사업체 수는 약 2,000개소였다.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사업체패널은 1, 2, 3차년도에 따라 조사대상의 기준을 달리하여 연도별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WPS 2005는 사업장 단위[1]의 표본조사이며,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수집되어 있는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규모인 모든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따라서 공공부문을 제외한 조사 대상 표본사업장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산업과 규모 및 지역을 모두 고려하여 3,916개 사업장을 층화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약 400여개의 공공부문[2]도 2005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으로 선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제공한 308개의 공공기관 및 51개의 지방 공기업을 포함하였다.

1) 단,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업은 기업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2) 공공부문은 20인 이상 규모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 표본설계 기본원칙

사업체패널조사는 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조사항목을 조사하는 다목적 조사이다. 사업체패널 표본설계의 기본원칙은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산업, 사업장 규모,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업장을 조사단위로 하였으며, 표본사업장은 일반 사업장과 공공 사업장을 구분하여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사업장 규모(사업장 내 상용근로자[3] 수에 기초하여 결정)가 커짐에 따라 표본 추출률이 커진다.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전수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기존 사업체 패널조사의 표본을 보면 모집단에 비해 대규모 사업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분석 단계에서는 가중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정결과에 편향(편의, bias)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전체 모집단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설계 뿐만 아니라 가중치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통계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 조사모집단 결정

Ⅰ. 일반 사업장 부문

조사 및 표본추출단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한다. 표본추출틀은 표본설계 당시에 최신 자료인 2004년 12월 말 기준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표본설계하고, 고용정보 DB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사업체 패널조사에서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국한하였다(단, 농·임업, 어업, 광업 등의 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종교단체(9191), 아파트 관리사무소(70211), 주점업(5523),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931), 회원단체[4](91) 등은 다른 일반적인 사업장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3) 사업체에 상근 고용된 자로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로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이라고 하는 자를 말한다.
4) 회원단체에는 산업 및 전문가 단체(911), 노동조합(912), 기타회원단체(919) 등이 있다.

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제외 산업분류 및 사업장 수와 상용근로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은 전체 조사대상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2.6%(1,005개소)이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상의 조직형태 구분은 개인사업체[5], 회사법인[6], 회사이외의 법인[7], 비법인 단체[8]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조직형태가 비법인 단체인 147개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사업장은 주로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 및 보험업, 전기, 수도 및 가스업의 표본추출은 해당 사업체의 본점을 대상으로 하였고, 나머지 업종의 경우에 공장이나 지사가 표본으로 추출된 경우는 이를 표본 사업체로 사용하였다. 유통업과 통신업 등에서 특정 사업체의 지점이나 영업소가 과다하게 추출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였다.

사업체 패널조사에서 층화는 지역, 산업분류 및 사업장 규모 등을 이용하였다. 사업장 규모 구분은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역 구분은 서울권, 경기·인천권, 강원·충청권, 전라·제주권, 영남권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사업체의 업종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12개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표본설계에 사용된 전체 층의 수는 지역(5)*산업분류(12)*규모(4)=240개 층이다.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사업장 업종 구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순수하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우도 포함한다.
6)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공기업이라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해당된다.
7)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이 있다.
8) 법인격이 없는 각종 협회, 조합,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교회 등이 있다.

[표 4]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산업 구분 현황

업종 구분		해당 산업분류
제조업	경공업	15-22, 36
	화학공업	23-26, 37
	금속, 자동차, 운송장비	27-29, 34, 35
	전기, 전자, 정밀공업	30-33
건설업		F. 건설업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업
	유통서비스업	I. 운수업
		J.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Q. 오락 및 문화 및 운동 R.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주 : 8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사업체 패널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조사모집단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금융 및 보험업, 전기 및 가스업에서 지점 및 지사 등은 제외한 결과이다.

[표 5] 산업 구분 및 사업장 규모별 모집단 사업장 수 현황 (단위 : 개소)

산업분류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계
제조업	경공업	3,835	779	112	62	4,788
	화학공업	2,441	543	84	65	3,133
	금속, 자동차, 운송	4,663	883	101	116	5,763
	전기, 전자, 정밀공업	2,351	644	89	115	3,199
건설업		1,455	201	19	21	1,696
개인서비스업		2,800	507	59	45	3,411
유통서비스업	운수업	1,976	1,019	80	46	3,121
	통신업	89	20	12	10	131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92	51	34	44	321
	기타	3,453	886	173	134	4,646
사회서비스업		4,474	733	97	152	5,45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7	12	0	0	39
계		27,786	6,378	1,160	1,310	35,704

Ⅱ. 공공 사업장 부문

공공 사업장 부문의 조사모집단은 기획예산처가 정한 공공기관 구분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사(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표본설계하고, 고용정보 DB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다만, 일반 사업장 부문의 조사대상과는 달리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였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구분기준(법 제3조)을 최대한 적용하되 예외범위를 축소'하여 총 314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정부가 최대 지분을 소유하는 출자기관, 법률에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출연기관, 정부지원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보조위탁기관, 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정부출연을 받은 재출연기관, 기타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경영혁신대상기관 등이 포함된다.

공공 부문의 최종 조사모집단은 기획예산처가 선정한 314개 전체 공공기관과 51개의 지방 공기업을 합쳐 전체 365개 공공기관으로 하였다.

4 층화 및 표본추출

Ⅰ. 일반 사업체 표본추출

사업체 패널조사의 층화는 산업구분, 사업장 규모 및 지역 구분 등을 이용하였다. 사업장 규모 구분은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역 구분은 서울권, 경기·인천권, 강원·충청권, 전라·제주권, 영남권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사업체의 업종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12개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표본설계에 사용된 전체 층의 수는 지역(5)×산업분류(12)×규모(4)=240개 층이다.

산업구분 내의 사업체 규모별 표본배분은 비례배분법, 제곱근 배분법, Kish 배분법, 절충배분법 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표본사업체 수는 전체 조사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업체 패널조사에서 표본크기는 95% 신뢰수준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오차의 한계를 전국 통계에 대해서 2.7% 이하, 각 산업구분에서는 8～10%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 목표 표본 사업체(공공 부문 사업체 제외) 수는 1,400개소이다. 각 산업 구분별 통계작성을 위해서 전기, 가스 및 수도업에 대한 표본 사업체 수는 25개로 결정하였다. 각 산업구분별 목표 표본 사업체 수는 각 업종별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우선 100～120개의 표본사업체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표본사업체는 각 업종별 표본사업체 수에 비례배분하여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표본배분 방식은 각 산업별 통계작성을 통해서 산업별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산업 구분에서 표본 사업체 수를 결정하면 모비율 추정의 허용오차의 한계는 약 8%내외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산업 구분에서 사업체 규모별 표본 사업체 수의 배정은 각 규모별 통계 작성을 위해서 각 규모에 대해서 일정 크기 이상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산업 구분*규모 구분에서 권역별 표본배분은 원칙적으로 비례배분하였다. 다만, 500인 이상 사업체는 전수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각 층별로 배정된 목표 표본사업체 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전체 약 3,900여 표본 사업장을 추출하였다. 다음은 1차로 추출된 표본 사업체 현황을 정리한 결과이다. 1차 표본사업체에 대한 응답 현황은 5. 응답 현황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표 6] 공공부문을 제외한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수 및 추출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제조업	경공업	207 (5.4)	119 (15.3)	95 (84.8)	59 (95.2)	480 (10.0)
	화학공업	140 (5.7)	98 (18.0)	74 (88.1)	56 (86.2)	368 (11.7)
	금속자동차운송	214 (4.6)	116 (13.1)	75 (74.3)	99 (85.3)	504 (8.7)
	전기전자정밀	147 (6.3)	100 (15.5)	80 (89.9)	98 (85.2)	425 (13.3)
건설업		170 (11.7)	97 (48.3)	13 (68.4)	15 (71.4)	295 (17.4)
개인서비스업		181 (6.5)	94 (18.5)	57 (96.6)	41 (91.1)	373 (10.9)
운수업		106 (5.4)	85 (8.3)	49 (61.3)	33 (71.7)	273 (8.7)
통신업		35 (39.3)	23 (100.0)	9 (75.0)	10 (100.0)	77 (57.5)
금융보험업		57 (29.7)	23 (45.1)	19 (55.9)	26 (59.1)	125 (38.9)
사업서비스업 기타		200 (5.8)	102 (11.5)	93 (53.8)	111 (82.8)	506 (10.9)
사회서비스업		182 (4.1)	94 (12.8)	79 (81.4)	112 (73.7)	467 (8.6)
전기가스수도업		13 (48.1)	10 (83.3)	–	–	23 (59.0)
전 체		1,652 (6.0)	961 (15.3)	643 (74.8)	660 (81.5)	3,916 (11.0)

<표 6>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WPS 2005의 산업 및 규모별 표본사업장 수와 표본추출률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표본추출률은 본 조사의 모집단 사업장수에 대한 표본사업장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본 조사의 모집단은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30인 이상 규모 사업장 36,069개이며, 여기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35,704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분석한 산업 및 규모별 표본추출률을 확인할 수 있다. 상용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소규모에 비하여 모집단수가 적기 때문에 모집단의 82% 가량을 조사 대상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모집단의 75% 정도의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실제 초기 표본설계 작업에서는 500인 이상 규모의 모집단 사업장 전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나,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장을 컨택하기 전에 목표하였던 산업·규모·지역별 쿼터가 완성되어[9] 조사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컨택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9) 「2005 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1,600개 사업장의 조사 성공을 목표로 산업·규모·지역별

사업장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Ⅱ. 공공부문 표본추출

사업체패널조사의 공공부문 표본은 기획예산처에서 선정한 314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예비조사 표본 6개[10]를 제외한 308개 공공기관과 그 밖에 51개의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추출하였다(<표 7> 참조).

[표 7] 공공부문 표본 현황

		예 시	표본수
기획예산처 선정기관[1)]	출자기관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9
	출연기관	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112
	보조위탁기관	대한체육회, 예금보험공사 등	94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철도광고(주) 등	58
	재출연기관	극지연구소, 학교법인기능대학 등	10
	경영혁신대상기관	예술의 전당, 한국언론재단 등	6
지방 공기업	서울	마포개발공사, 지방공사강남병원 등	7
	인천경기	경기관광공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19
	강원충북	강원도개발공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등	7
	전라제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등	5
	영남	경상북도개발공사, 지방공사대구의료원 등	13
전 체			359

주 : 1) 기획예산처에서 선정한 공공기관의 분류는 표본 추출시점인 2006년 초 기준임.

목표 표본 크기를 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개이다.

3 가중치 산정

1 표본 가중치

Ⅰ. 개요

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 WPS 2005, WPS 2007과 WPS 2009의 사업체의 횡단면 가중치와 근로자 가중치와 패널가중치를 제공한다. 여기서 근로자 가중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염두해 둬야할 점이 있다. 표본을 사업체단위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분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 수에 대한 분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적으로 근로자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하는 **근로자 가중치는 상시근로자(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근로자)로 정의**하여 가중치를 준 것으로 상시근로자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가중치를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분석시 활용되는 경우에 근로자 가중치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가중치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단위로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을 내어 사업체 가중치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근로자 가중치는 보조적 수단의 가중치임을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

사업체패널조사에서 표본 사업장은 크게 일반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추출되었다. 먼저 일반 사업장은 산업구분(12), 사업장 규모(4)와 지역(5)을 층화변수로 층화하여 층화임의추출법에 의해서 추출되었다. 전체적으로 표본 사업장의 추출률은 사업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커지고, 특히 상용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전수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각 표본 사업장의 추출률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표본 사업장의 추출확률이 각각 다를 경우에 모집단 특성치에 대한 비편향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기 위해

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사업체패널조사 적용된 가중치 작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Ⅱ. 설계가중치 산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체 패널조사의 표본사업체는 사업장 규모(4), 산업구분(12)과 지역(5) 등을 층으로 하는 층화임의추출법에 의해서 추출되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 표본 사업장 추출확률은 원칙적으로 각 층에서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하였다.

$$\text{추출확률} = (\text{해당 층의 표본 사업장수})/(\text{해당 층의 모집단 사업장 수}) = n_h/N_h$$

본사 기준으로 조사된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수도업과 통신업 등은 지역 구분을 무시하고, 산업구분과 사업장 규모 구분만을 고려하여 표본 사업장 추출확률을 구하였다. 한편, 전수추출한 공공 부문 사업장은 사업장에 대한 모집단 세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층으로 간주하여 표본 사업장 추출확률을 구하였다. 각 표본 사업장의 설계 가중치(design weight)는 앞서 구한 표본 사업장 추출확률의 역수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i = 1/\text{추출확률} = N_h/n_h$$

Ⅲ. 무응답 보정

표본조사에서 무응답은 단위 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단위무응답(개체 무응답, unit non-response)은 표본 사업장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접촉이 불가능하여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은 표본 사업장이 응답하였으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을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표본조사에서 단위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이를 보정하고, 항목 무응답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항목의 무응답 대체를 위해서 앞서 설명한 대치법(imputation)이 주로 사용된다. 사업체패널에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는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공공부문 사업장과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산업 구분에서 응답률의 차이는 크지 않다. 지역 구분과 사업장 규모 구분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도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응답 보정이 가중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무응답 조정을 위해서는 무응답 조정 군(셀, cell)을 정의해야 한다. 사업체패널에서 일반 사업장 부문에서 사용된 무응답 조정 군은 표본설계에서 층화변수 중에서 지역 구분을 무시하고 사업장의 산업 구분과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였다. 사업장의 산업구분과 사업장 규모가 동일하면 주요 조사변수가 유사한 값을 나타낼 것이고, 표본 사업장의 응답률도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참고로 응답여부(응답:1, 무응답:0)를 종속변수로 하고, 산업구분, 사업장 규모, 지역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적합한 결과에 의해서도 산업구분과 사업장 규모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공 부문 사업장은 전체를 하나의 층으로 간주하여 무응답 조정 군으로 사용하였다. 표본조사에서 단위 무응답을 보정하기 위한 무응답 조정(non-response adjustment)은 각 무응답 조정 군에서 다음 식에 따라서 구한다.

$$F_c = \frac{\sum_{i=1}^{n_1} w_i + \sum_{i=1}^{n_2} w_i}{\sum_{i=1}^{n_1} w_i}$$

여기서 n_1은 조사가능 사업장 중에서 해당 무응답 조정 군에서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수를 의미하며, n_2는 조사가능 사업장 중에서 해당 무응답 조정 군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무응답 사업장 수를 뜻한다.

무응답 조정값을 구한 후에 무응답 조정을 거친 1차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값의 곱으로 구한다. 무응답 조정의 의미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무응답을 조정함으로써 추정 결과의 편향(치우침)을 줄이는 것이다.

$$1\text{차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값} = w_i \times F_c$$

사업체패널조사에서 산업 구분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는 크지 않아서 무응답 조정값에 대한 극단값 조정은 따로 하지 않았다.

Ⅳ. 사후층화 조정

1차 가중치는 극단값 조정(trimming the extreme weights)의 단계를 거쳐서 조정된다. 1차 가중치에 대한 극단값 조정은 산업구분과 사업체 규모 구분에서 이루어졌다. 1차 가중치가 해당 산업분류과 사업체 규모 구분에서 가중치의 중앙값을 3배 또는 1/3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가중치의 극단값 조정은 사업체 패널 추정결과에 약간의 편향(치우침)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가중치의 극단값을 조정함으로써 추정결과의 표준오차는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중치의 극단값 조정을 통해서 추정결과의 평균제곱오차(MSE; Mean Square Error)는 줄어들게 되어 추정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사후층화 조정은 통계분석에서 자주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특성 변수에 대해서 모집단과 표본 자료의 분포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 패널에서는 산업구분(12)과 사업장 규모 구분(4)을 사후층화 조정 군으로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후층화 조정 군은 전체 48개가 생성된다. 모집단 자료와 표본조사 자료의 사업장 규모 구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후층화 조정을 위한 사업장 규모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 사후층화 조정을 위해서 사용된 자료는 사업체 패널의 조사시점과 거의 비슷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종 사업체 가중치는 가장 최신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층화 보정의 단계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1차 가중치(극단값 조정 후)} \times \text{사후층화 조정값}$$

2 패널 가중치 산정

WPS 2005는 1차년도 조사로 횡단면 조사의 성격만을 지니게 된다. WPS 2007, WPS 2009, WPS 2011 조사는 패널조사와 횡단면 조사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패널 가중치를 함께 산정되어야 한다. 패널 가중치는 WPS 2005 횡단면 가중치와 WPS 2007 응답확률, WPS 2009 응답 확률, WPS 2011 응답 확률을 함께 이용하여 산정된다.

WPS 2005 패널 사업장 중에서 WPS 2007, WPS 2009, WPS 2011 패널에 응답할 확률은 표본 사업장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패널 가중치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을 때는 추정결과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WPS 2005에 응답한 표본 사업장이 WPS 2007, WPS 2009, WPS 2011 조사에 응답할 확률은 WPS 2005 조사결과의 사업장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모형을 통해서 추정될 수 있다. 즉, WPS 2007, WPS 2009, WPS 2011 패널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반응변수로 하고, 산업분류, 지역, 근로자 수, 노조 유무, 설립연도, 본·지사 등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적합하여 응답률의 차이를 보정 했다.

패널가중치를 활용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WPS 2005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반영과 2005년 사업체들의 2011년까지의 생존확률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패널가중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2005년에 있는 사업체가 2011년까지 생존하였을 경우의 사업체 내의 변화로 해석해야 한다. 즉, 패널가중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사업체의 변화로 일반화시켜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3 추정방법

사업체패널조사에서 모집단에 대한 각종 평균 특성치는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bar{y} = \frac{\sum_{h=1}^{H}\sum_{i=1}^{n_h} w_{hi} y_{hi}}{\sum_{h=1}^{H}\sum_{i=1}^{n_h} w_{hi}} = \frac{\sum_{h=1}^{H}\sum_{i=1}^{n_h} w_{hi} y_{hi}}{w_{..}}$$

- w_{hi} : 각 조사 사업장에 부여된 가중치,
- y_{hi} : 각 조사 사업장의 변수값
- $w_{..} = \sum_{h=1}^{H}\sum_{i=1}^{n_h} w_{hi}$: 조사 사업장에 대한 가중값의 합을 뜻함

복합표본조사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하면 모수 추정에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고, 추정량의 분산이 과소평가되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업체패널조사에서 횡단면 분석(모집단 특성치에 대한 추정)은 가중치를 이용한 통계치를 이용해야 한다.

영국 WERS 분석에서는 조사데이터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로 STATA(version 9)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합표본설계에 의한 조사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로는 STATS이외에 SUDAAN, SAS, SPSS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SAS(ver 8 이상)와 SPSS(ver 14) 등은 층화와 가중치를 반영한 추정치 및 표준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

4 실사 진행 및 조사 결과

1 실사 진행

□ 『사업체패널조사』는 WPS 2011 조사시 새로운 조사업체(나이스 R&C)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조사 기획 및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 예비조사

조사 사업체 수 : 110개 완료 (컨택 308개)
조사 기간 : 2012년 5월 10일 ~ 2012년 5월 21일
목적 : 조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CAPI 시스템 점검

▪ 컨택원 및 면접원 교육

컨택원 교육을 먼저 6월 18일 1일간 진행하였다. 설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2일에 전체 면접원을 대상으로 본조사 집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후 서울(경기, 인천, 강원, 제주, 광주), 대전(전남, 전북, 광주), 대구, 부산 총 4개 지역을나눠 7월 3일부터 6일까지 CAPI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면접원 교육 순서는 조사 개요 및 설문지에 대한 설명, CAPI 교육 및 실습, Feed-Back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사업체패널조사는 데이터의 연속성 등 조사 품질 유지를 위하여 조사 업체는 바뀌었지만 WPS 2009에 참여한 면접원을 섭외하였고, 우수한 신규 면접원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표 8] 면접원 현황

	총 투입인원	진행 면접원		탈락 면접원
		신규	기존	
서울, 강원, 경기, 인천	27	23	5	18
대전, 충북, 충남	6		6	
대구, 경북	5	5		
부산, 울산, 경남	11	7		4
광주, 전북, 전남, 제주	7	6	1	
합계	56	41	12	5

▪ 진행 결과

총 1,770개 사업체에서 조사가 성공하였으며, 이 가운데 8월까지 32%가 완료되었지만, 9월부터 조사성공률 더뎌지면서 10월에는 6.6%밖에 조사가 성공하지 못하였다. 11월부터 다시 조사 성공률을 회복하여 11월에 10.8%, 12월에 26.8%로 12월까지 약 90%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2013년 1월부터는 리체크 조사와 함께 193개를 추가적으로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1,770개의 사업체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 컨택이 주로 진행되는 7월 말이 지나면서 집중적으로 많은 성공이 이루어졌고, 조사 중반인 11월과 12월에는 초기 컨택시 응답시기를 보류했거나 조사가 중단되었던 사업체를 재방문하는 등의 작업을 병행하면서 조사 성공사업장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5] 조사시기별 성공사업체 수와 누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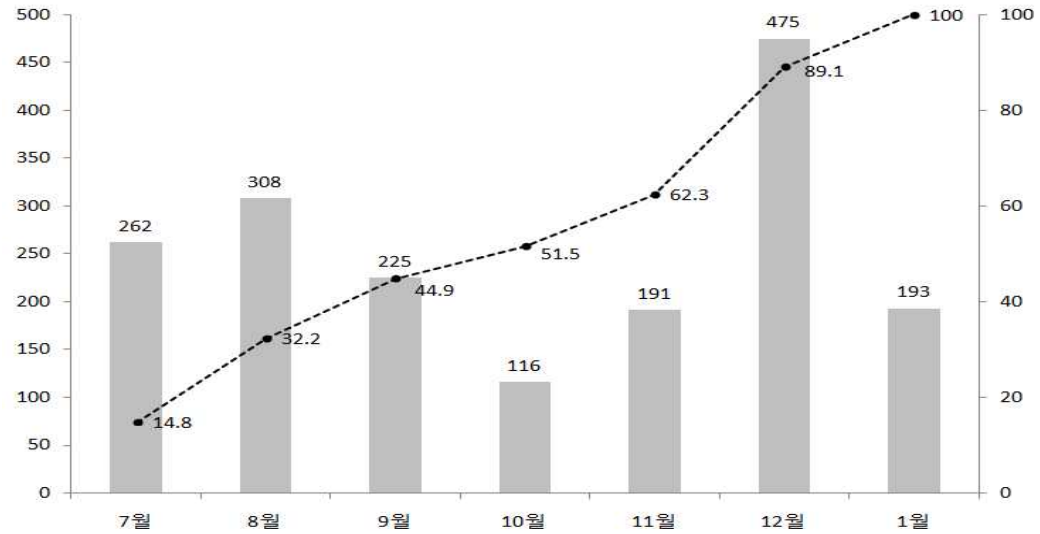

2 응답 결과

[표 9] 설문 응답 소요시간

	전체	인사/노무 동일	인사/노무 다름
전체	71.7분	69.3분	93.9분
인사담당자	49.5분	48.5분	58.7분
노무담당자	12.6분	11.7분	21.5분
근로자대표	9.6분	9.2분	

WPS 2011는 패널사업장(민간부문 1,615개와 공공부문 134개), WPS 2007 추가표본 사업장 320개, WPS 2009 추가표본 사업장 231개와 WPS 2011 추가 표본 사업장 1,362개를 대상으로 2012년 7월 말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패널사업장 1,091개(민간부문 987개와 공공부문 104개), WPS 2011의 추가표본 사업장 238개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패널사업장 중 폐업, 휴업 등 해당안됨 등의 사유(2007년부터 누적)로 127개(7.3%) 사업장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표본 1,622개 중 531개 사업장이 응답거절, 내부결제, 2011년에 조사가 되었으나 패널은 끊김 등의 사유로 패널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1,091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가 성공하여 폐업, 휴업 등을 제외한 패널 유지율은 67%정도로 나타났다.

[표 10] WPS 2005-2011 패널사업장 조사완료 현황

		패널사업장					
		전 체		민간부문		공공부문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조사 제외	폐업,휴업 등 해당안됨	127	7.3	124	7.7	3	2.2
조사 실패	거절	226	12.9	222	13.7	4	3.0
	기타사항[1)]	206	11.8	87	12.1	12	8.2
	2011 조사완료나 패널 끊김	99	5.7	195	5.4	11	9.0
	소계	531	30.4	504	31.2	27	20.1
조사 성공		1,091	62.4	987	61.1	104	77.6
전 체		1,749	100	1,615	100	134	100

주 : 1) 표본사업장에서는 기타사항이 '내부결제중, 진행보류 등을 의미'하고, 추가리스트에서는 '내부결제중, 진행보류뿐 아니라 진행중단을 의미'함. 또한, 2007년이나 2009년에 지나치게 강력한 거절로 인하여 컨택을 하지 못하는 사업체 또한 포함됨.

User's Guide

Ⅱ. 사업체패널조사 데이터 설명

1 데이터 이용방법 소개

1 데이터 이용 Tip

□ 데이터 다운로드

인터넷 홈페이지 http://kli.re.kr/wps 를 통해 사업체패널조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설문지, 코드북, 유저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다운로드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절차로 차별화했다.

□ 설문지 사용방법

- 설문지는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바에서 설문지를 클릭하면 현재 최근 업데이트 되어 있는 설문지가 PDF 파일 형식으로 올려져 있다.

- 통합설문지로 WPS 2005, 2007, 2009, 2011의 설문을 한번에 보여주고 있다.

- 설문구조가 CAPI 방식으로 이루어져 기존의 'paper & pencil' 형식의 설문지에서와의 구조가 다르다. 설문지 문항번호 및 CAPI 로직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기호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공공부문,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보험업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전체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설문지에서 공공부문은 '귀 기관은...',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보험업은 '귀사는...', 나머지 사업장은 '귀 사업장은...'으로 하여 질문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기호

Ⓓ 서술 문항; 서술형식의 지시문으로 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 택일 문항; 보기 중 해당하는 항목을 한가지만 선택한다.
Ⓦ 선택 문항; 보기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한다.
① 숫자 문항; 해당하는 응답을 숫자로 기입한다.
Ⓣ 문자 문항; 해당하는 응답을 문자로 기입한다.
Ⓜ 행렬 문항; 각 행(또는 열)의 문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항목을 각각 선택한다.
Ⓒ 계산 문항; 컴퓨터에서 자동 계산하여 변수를 생성하는 단계이며, 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 함수 문항; 컴퓨터에서 문항의 로직을 컨트롤하는 단계이며, 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 이동 문항; 조건에 따라 해당 문항으로 이동하는 단계이며, 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DK(Don't know) : 모름
RF(Refuse) : 응답거부

□ 통합설문변수명 이용방법

▪ WPS 2005, 2007, 2009, 2011 설문한 문항의 경우 오른쪽 상단에 까맣게 칠해진다. 여기서는 4가지 정도의 예시를 보여준다.

예시 1. WPS 2005, 2007, 2009, 2011 모두 설문함 (A001)

A001. Ⓥ 05 07 09 11

귀사는 단독 사업장입니까? 다수 사업장입니까?

① 단독 사업장
② 다수 사업장

▪ 아래와 같이 설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얗게 나타난다.

예시 2. WPS 2007, 2009, 2011만 설문함 (A112)

A112. Ⓥ

05	07	09	11
	■	■	■

작년 말 기준으로 귀 기업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대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는 그 합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3인이면서 각각 30%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90%라고 입력하여 주십시오.

_____ %

예 시 3. WPS 2011만 설문함 (B123)

B123. ①

05	07	09	11
			■

작년 말 기준으로 귀 사업장의 [EP037]에 사업확장에 따른 공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없는 경우에는 '0'이라고 입력하여 주십시오.

_____ 명

예 시 4. WPS 2011에 설문이 삭제됨 (C202)

C202a1-C202a3. Ⓦ no DK no RF

05	07	09	11
■	■	■	

귀 사업장의 기본급 구성내역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호봉급
② 직능급
③ 직무급

▪ 아래 예시처럼 WPS 2005, 2007, 2009, 2011 문항이름을 활용한다.

예 시. 변수명 활용

		WPS 2005	WPS 2007	WPS 2009	WPS 2011
기본사항	SEP	SEP05	SEP07	SEP09	SEP11
	IND9_	IND9_05	IND9_07	IND9_09	IND9_11
	IND8_	IND8_05	IND8_07	IND8_09	
	REG	REG05	REG07	REG09	REG11
	P_WGT12		P_WGT12		
	P_WGT123			P_WGT123	P_WGT123
	P_WGT1234				
	C_WGT	C_WGT05	C_WGT07	C_WGT09	C_WGT11
	C_WGTE	C_WGTE05	C_WGTE07	C_WGTE09	
근로자현황	EP001	EP05001	EP07001	EP09001	EP11001
재무현황	FP001	FP05001	FP07001	FP09001	FP11001
일반문항	A001	A05001	A07001	A09001	A11001
복수응답문항	A107a1	A05107a1	A07107a1	A09107a1	A11107a1

▪ 아래 예시처럼 설문문항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점선의 도형 안에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예 시. 설문마다 설명 포함

B102a1-B102a9. Ⓦ

05 | 07 | 09 | 11

[EP037]을 포함하여 귀 사업장에서 정규직근로자가 있는 직종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기술직(준전문직)
④ 사무직
⑤ 서비스직
⑥ 판매직
⑦ 농임어업 숙련직
⑧ 생산직
⑨ 단순직

※ B102문항은 2005년도에는 제5차 표준직업분류를 적용하여 '③ 기술직(준전문직)' 이 있으나 2007년과 2009년도에는 제6차 표준직업분류를 적용하였음

▪ CAPI로 진행된 설문이기 때문에 설문문항에 변수명이 부여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시. 설문지에 변수명이 있으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변수 예시(A101)

A101. Ⓓ

다음은 기업의 특성 및 조직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업의 특성 및 조직변화에 해당하는 질문은 귀 사업장이 속한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A102. Ⓥ

05 | 07 | 09 | 11

귀 기업의 조직 유형은 다음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① 개인사업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② 회사법인 (주식 · 유한 · 합자 · 합명회사, 외국회사)

③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④ 회사이외의 법인 (재단 · 사단 · 종교 · 특수법인 등) ; 학교 · 의료법인 제외

▪ 복수선택의 문항인 경우 모두 더미변수화 되어 있다. 더미로 처리된 변수명은 문항번호 뒤에 A1, A2, … 으로 하여 프로그램 사용시 가독성을 높였다.

예 시. 성과 산정시 산정단위에 포함되는 항목(C310)

C310a1-C310a5. Ⓦ

05 | 07 | 09 | 11

귀 사업장에서 성과배분(고정/변동 상여금)을 위해 성과를 산정할 때 산정단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그룹전체 성과 → **변수명 : C310A1**

② 기업전체 성과 → **변수명 : C310A2**

③ 사업장 성과 → **변수명 : C310A3**

④ 부서 또는 팀 성과 → **변수명 : C310A4**

⑤ 기타, _____ → **변수명 : C310A5**

▪ 기타항목의 경우 변수명은 있지만 프라이버시 문제 상 기타 항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파생변수

▪ 지역변수(REG)

지역변수는 사업장 주소로부터 새롭게 만든 변수임.

11) 서울 21) 부산 22) 대구 23) 인천 24) 광주 25) 대전
26) 울산 31) 경기 32) 강원 33) 충북 34) 충남 35) 전북
36) 전남 37) 경북 38) 경남 39) 제주

□ 결측치 유형 설명

▪ 모름: 9, 99, 999, 9999, … (해당변수(문항) 자리 수에 따라 결측치의 자리수가 늘어남.)
▪ 무응답: 98, 998, 9998, …
▪ 해당없음: 97, 997, 9997, …

2 Key 변수

□ 사업체 ID(ID)

사업체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사업체를 반복 추적조사하기 때문에 패널구성원의 이름이라 할 수 있는 Key변수인 ID가 부여되었다.

▪ '사업체'와 '기업'의 차이

- 사업체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하나의 주된(또는 단일)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 또는 기업을 구성하는 부분 단위를 의미한다. 사업체의 형태로는 회사(본사·점, 지사·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상점, 식당, 병·의원, 관공서, 학교, 주점, 창고, 물류센터, 종교단체, 신문사, 방송국, 금융기관 등이 있다.

- 기업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단위로써 수입·지출에 대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기타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위로 1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다.

▪ 조사의 단위가 되는 사업체의 구분 기준

- 장소에 의한 구분

사업체는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개의 장소별로 사업체를 구분한다. 따라서, 경영주체가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개개의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한다.

-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

사업장소 및 사업의 종류가 같더라도 경영주체가 서로 다르면 경영주체별로 사업체를 구분한다. 따라서 빌딩, 공장부지내 등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경영주체가 산업활동을 할 경우 경영주체별로 별도사업체로 조사한다.

- 본사와 지사의 구분

같은 빌딩 내에 동일 회사의 본사와 지사가 있을 경우, 본사와 지사를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그 외의 Key 변수

□ 사업장 구분(SEP)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 이유 설명
(1:일반사업장, 2:전기・가스・수도업, 3:금융・보험업, 4:통신업, 5:공공부문)

□ 사업체종류(A001)

- 단독사업장(1기업 1사업체)
  다른 장소에 본사, 본점 또는 공장, 지점 등이 없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 다수사업장
  - 본사, 본점, 본부
    다른 장소에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연락사무소, 지회·부, 분점·회 등을 두고 이들을 총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실제로 기획, 회계, 재무, 구매, 광고, 법무 등 총괄적인 관리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체이다.
  -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역본부
    다른 장소에 있는 본사, 본점, 본부 등이 있어 이의 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상위 사업체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또한 다른 하위 사업체를 총괄하는 중간 단계 사업체도 포함된다.

□ 조직 유형(A102)

- 개인사업체
  - '개인사업체'란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 대리점·특약점·가맹점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개인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명칭과 관계없이 개인사업체로 분류한다.

▪ 회사법인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금융기관(농·수·축협 제외), 기타 상법상의 법인,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지점 등도 포함된다.

▪ 회사이외의 법인

- '회사이외의 법인'이란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인, 민간의료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다.
- 정부투자기관(공사, 지방공사, 공단 등), 조직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농·림·수·축산업 협동조합(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제조합 등은 공공부문에 포함된다.

▪ 공공부문

공기업, 정부 투자·출자·출연기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부투자기관(공사, 지방공사, 공단 등), 조직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농·림·수·축산업 협동조합(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제조합 등이 포함된다.

□ 주요업종(IND8_, IND9_)

▪ 뒤의 표준산업 8차, 9차 분류표를 참조

▪ 산업코드 2자리 공개

IND8_ :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에 따름

IND9_ :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따름

▪ 사업내용

사업체가 "어떤 것을 주로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의 구체적인 사업활동 내용을 의미한다.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주된 산업을 의미한다.

▪ 다수사업체의 경우 업종의 기준

- 본사·본점 등에서 관리사무 만을 하고 있는 사업체, 즉 영업소·공장 등 사업체가 다른 장소에 있고 이들 사업체의 관리 사무만을 하고 있는 본사·본점은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사업체의 산업활동 중 주사업내용을 조사한다.
- 그리고 관리 하에 있는 지사·지점·영업소·출장소·공장 등의 각 사업체는 회사(기업) 전체의 주사업내용이 아닌 당해 사업체의 사업내용을 조사한다.

▪ 제조, 도·소매인 경우 산업분류 적용방법

- 제조하여 출하, 도매 → 제조업
  해당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을 출하 또는 도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가공업자에게 제조·가공시켜 자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 제조하여 소매 → 제조업
  해당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을 판매시설을 갖추고 최종소비자에게 소량·낱개로 판매 하는 경우
- 직접 제조하지 않은 상품 도매 → 도매업
  해당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지 않은 상품 즉, 같은 기업체 소속 타사업체가 생산한 상품 또는 다른 사업체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타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사용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 직접 제조하지 않은 상품 소매 →소매업
  해당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지 않은 상품 즉, 같은 기업체 소속 타사업체가 생산한 상품 또는 다른 사업체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시설을 갖추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사업내용 분류 원칙

-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
  광업이란 천연광물의 채취, 채굴, 추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도 광업으로 분류됨
-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이란 재료(물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이를 판매(도·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부품조립 작업은 제조가공에 해당하나 단순히 제품을 선별, 포장, 용기에 담는

등의 품질개선 및 판매활동에 관련된 부수적 활동은 제조에 포함되지 않음

-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업이란 건축물의 건설, 지반조성공사 및 기계, 장치 등의 설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주거 및 빌딩건물 건설은 물론, 항만, 철도건설, 전기조명기구, 엘리베이터, 냉난방설비 들을 설치하는 설비공사 등도 포함됨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매업, 소매업이란 상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와 상품의 매매대리,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재판매 대상은 도매업의 경우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사용자(생산활동에 이용)등이며, 소매업의 경우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임

- 숙박,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음식점은 한식요리, 일식요리, 중화요리, 서양요리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과 피자, 분식, 김밥 등을 제공하는 기타 일반음식점, 요정, 룸싸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호프집 등 주점업과 제과점 등이 포함됨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업이란 토지·건물 및 기타 부동산의 임대, 매매, 교환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 직접 건설한 부동산의 개발 분양 및 임대활동을 포함함

※ 부동산업의 구성 :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기타부동산에 대한 임대(자영관리소),(개발) 공급과 대리관리, 중개, 감정활동이 포함됨

□ 근로자 직종

▪ 통계청의 표준직업 5차, 6차 분류를 사용함. WPS 2005에는 5차 분류를, WPS 2007, WPS 2009와 WPS 2011에는 6차 분류를 활용함

▪ 직종이 설문에 포함된 문항 B211, B237, B214, P133, P209 등의 여러 문항에서 5차와 6차 분류를 모두 만족하기 위하여 9개 문항으로 구성함. 분석시 표준직업 5차, 6차 분류표를 참조.

□ 설립연도(A203)

▪ '설립연도'란 최초로 산업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로써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 관계없이 최초

영업을 시작한 시점을 의미한다.

-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의 설립년도는 본사(점)의 창설시기가 아니고 그 지사, 지점 등이 영업을 개시한 시기를 의미한다.

- 설립년도가 바뀌지 않고 기존 설립년도가 유지되는 경우
  - 상속으로 인계받은 경우
  - 사업체가 이전된 경우나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신축, 개축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전한 이후에 원래의 장소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
  - 사업체명만 변경되고 폐업한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할 경우
  - 화재 등 그 밖의 재해를 입은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
  -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흡수합병 되었을 때 흡수한 사업체의 경우

- 설립년도가 다음의 시점을 기준으로 바뀌는 경우
  - 현재의 장소에서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경우
  - 개인사업체가 상속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
  - 개인사업체가 회사법인 또는 회사이외 법인으로 경영조직이 변경된 경우
  -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하나로 대등 합병한 경우
  -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흡수 합병되었을 때 흡수된 사업체의 경우
  - 자회사, 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이 새로 개설되는 경우

2 주제별 가이드

1 기본정보

EP. 근로자 현황

□ 사업체패널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

▪ 전체근로자

- '전체근로자'란 해당 사업체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해당 사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도 포함된다.
- 그러나 사업체에서 일은 하지만 직접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근로자나 프리랜서,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임시근로자,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은 경우의 특수고용(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단, 해당 사업체가 소속된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세일즈맨이나 본사로부터의 파견된 근로자는 해당 사업체가 업무의 주된 보고 대상일 경우 전체 근로자에 포함한다.

▪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란 사업체에 상근 고용된 자로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로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포함된다.
- 유급 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 감사 등)은 포함되나 무급 비상근임원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란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계속고용이 보장되고,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 따라서 전체근로자 가운데 기간제(계약직/한시적) 및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 비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 외국인 근로자 : 합법·불법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 이외의 모든 외국 국적 근로자 (산업연수생 포함).
- 기간제(계약직/한시적) 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갱신을 통하여 고용 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
-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 통상적인 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4시간 전후)보다 현저하게 짧은 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0시간) 또는 통상적인 근무일수보다 적게(예를 들면 1주일에 3,4일) 근로하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파견근로에관한법'의 파견사업주를 통해 고용되나 사용자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시 등 근로제공 방법에 있어서는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 용역 근로자 : 다른 사업주(용역업체)가 고용하고 사용자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파견근로에관한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시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이 해당.
- 일시대체 근로자 : 정식사원의 결원 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일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 특수고용형태/독립도급 근로자 :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도우미, 레미콘 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해당.

- 재택/가내 근로자 : 근로제공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로써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114전화안내 등)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무자(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로 구분.
- 사내하청 근로자 : 하청업체에 고용된 자로 대부분 원청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원청회사 근로자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내하청이란 하청업체가 일정한 생산 업무를 도급받아 원청회사의 사업체와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임)
- 일용 근로자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로서,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

□ 사업체패널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직 사유

▪ 자발적 이직

자발적 이직이란 전직(다른 직장을 구하는 경우), 창업, 학업, 육아, 심신장애 및 기타 개인적인 상정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해지

계약해지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기간을 정해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기간제근로자에 적용된다.

▪ 정리해고

정리해고란 근로기준법 31조를 적용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 기타 해고

기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사나 외주하청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 WPS 2011에서 새로 바뀐 사항

▪ 노동조합

2005년에는 EP038에서 전체 조합원 수를 설문하였고, 2007년과 2009년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EP038, EP138로 나눠 설문하였다. 2011년부터 근로자 현황에서는 노동조합 수와 각 노동조합별 근로자 수를 설문하는 방안으로 바뀌어 EP038에 최종적으로 전체 조합원 수를 설문하였다.

A6 작년말 기준 전체근로자 중 노동조합 근로자 현황

귀 사에는 노동조합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EP081	개
제 1 노동조합에 가입된 남녀근로자 수	EP082	명
제 2 노동조합에 가입된 남녀근로자 수	EP083	명
제 3 노동조합에 가입된 남녀근로자 수	EP084	명
노조 1,2,3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수노조 조합원 남녀 근로자 수	EP085	명
전체노조원수	EP038	명

FP. 재무 현황

※ 사업체패널 조사의 재무 정보 수집 방법

- 사업체패널 조사에서 재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재무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기반이 아닌 기업체 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어 사업체 조사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재무 정보에 대해서만 사업체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로써만 재무 자료를 조사하는 거에는 한계가 많아 사업체패널 조사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재무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 이때, 활용된 정보는 금융감독원과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시자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데이터 정보 등이 활용되었다. 2014년에 새로이 한국기업데이터 정보가 추가되면서 보다 더 많은 재무 자료가 확보되었다.
- 사업체패널 자료 공개시 과거 조사 자료는 거의 동일하나 재무 정보는 공개시 마다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재무작성기준

- 변수 FP001~FP011은 재무정보의 범위, 회계기간, 회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 등 재무작성의 기준이 되는 변수

- 재무정보 응답 시 공공부문, 금융·보험 또는 전기·가스·수도업종인 경우 모든 재무정보는 사업장이 속한 기업(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함

- 변수 FP011은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하므로, 연말 기준 근로자 수(변수 EP002)와 다를 수 있다. 또한 각 사업장의 재무작성기준이 기업전체인지 또는 개별사업장인지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근로자수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함.

※ 손익계산서상 정보

- 변수 FP101~FP115 는 사업체의 손익계산서 상의 정보이다. 각 항목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0만원 단위가 되도록 반올림함

□ 매출액 정의

- 매출액은 응답한 회계연도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 공공부문의 경우 손익계산서 상의 사업수익을 의미하며, 금융·보험업의 경우 영업수익을 의미한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성과표 상의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매출'을 합한 '사업수익'을 의미한다.

□ 영업비용 정의

- 영업비용은 매출원가(변수 FP104)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변수 FP105)의 합으로 나타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상품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키며,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 경비가 포함된다.

□ 인건비

- 인건비에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 이는 판매비와관리비 뿐만 아니라 제조원가명세서(업종에 따라 운수원가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공사원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및 개발비 상의 금액도 포함된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판매비와관리비 상에 계상된 인건비 변수는 급여(FP106), 퇴직급여(FP107), 복리후생비(FP108)이다. 총인건비 가운데 판매비와관리비 상에 계상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의 변수로 급여(FP301), 퇴직급여(FP302), 복리후생비(FP303)의 나타내었다. 또한 응답에서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총인건비로만 응답한 경우, 변수 FP304로 나타내었다.

- 손익계산서 외의 계산되지 않는 임차료(FP305), 세금과공과(FP306), 감가상각비(FP307) 변수를 추가하였다.

- **총인건비(FP401)와 1인당 인건비(FP402) 변수를 추가하였다.**

2 인사담당자 응답용 설문

A. 사업장 특성

□ 기업의 특성 및 조직변화

▪ 기업집단

- '기업집단'이란 각각의 기업은 법률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또는 금융상 공동이익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두 개 이상의 기업집중형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 사업장 특성 및 환경

▪ 하도급 거래

위탁업체가 특정한 제품 혹은 서비스의 형태를 결정해 주고, 이에 따라 납품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 부자재의 납품이나 일반시장 거래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주문 납품하는 것과는 다르다.

□ 성과변수

▪ 재무적 성과지표

기업의 여러 성과들 중에서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는 값이다.

▪ 노동생산성

노동의 능률을 말하는 것으로 투하한 노동량과 그 결과에서 얻어진 생산량(또는 부가가치)

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생산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 생산효율, 기술수준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임금협상시 근거지표 등으로 사용된다.

- 이직률

  일반적으로 이직자 수를 전월말 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직은 근로자들을 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면직시키는 해고, 근로자 자신의 희망에 의한 사직, 퇴직, 그리고 동일 기업내의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한에 의한 전출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B. 고용현황 및 고용관리

□ 고용관리(채용 및 이직 관리)

- 공석 충원 방식
  - 내부충원 : 조직내부인력을 승진시키거나 재배치시켜 공석인 직무를 채우는 것
  - 외부충원 : 조직외부로부터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것
  - 사내공모 : 회사내 희망자들을 공개 모집하여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제도

- 발탁승진제도

  사원들의 능력발휘를 위해 근무연한, 해당 직급에서의 체류년수, 연령에 관계없이 성적이 우수한 자를 조기에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 복수의 경력경로(Dual ladder)

  자신의 희망이나 회사차원에서의 필요에 따라 현재 소속된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또는 병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관리하는 인사정책시스템을 의미한다.

□ 사업장 유연성

- 사내용역 또는 사내하청

  사업장이 외부업체 직원을 파견 받아서 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

는 것을 의미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 이유(B07209/B07212/B07229/B07215)에 대한 설문이 2005년도 응답 항목이 많아 2007년에는 통합 축소하였다. 항목 통합은 아래의 표와 같다.

① 인건비 절감	비용절감
② 고용유연성	일시적 수요, 일시적 공석, 휴직 대체, 고용조정 용이
③ 업무 성격	충원 어려움, 숙련필요, 기피업무 수행
④ 정원 동결	
⑤ 기타	

□ 비정규직 근로자

- 주된 비정규직

  가장 수가 많은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주된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하였다. 단, 가장 수가 많은 고용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는 응답자가 그 중 1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응답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때, 간접고용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C. 보상 및 평가

※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문을 받았음에 유의한다.

□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직종이 관리직일 경우(C102)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 Part에서 관리자급과 사원급을 분리하여 응답을 받는다. 따라서 앞의 EP037에서 정규직근로자만 고려할 때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직종이 관리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다시 한번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 중에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직종을 묻는 질문이 추가된다. 추가 질문에서도 관리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

▪ ‘인사고과’란 직장의 감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성적을 분석적으로 평정하는 일을 의미하며, 종업원의 업무수행상의 업적과 집무태도와 이를 통한 미래의 잠재적 능력 및 성격을 상위자가 측정·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인사고과 방법
- 다면평가: 직속상관과 차상위자 이외의 사람들도 피평가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평가제도를 의미한다.
- 목표설정방식: 조직의 상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조직단위와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뒤, 각 조직단위 및 구성원들의 업적을 측정 평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포괄적 조직관리체제를 의미한다.

▪ 임금인상 차등폭

‘차등폭’이란 동일 직급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얻은 사람과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얻은 사람 간에 연봉의 차등인상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5%인 경우의 차등폭은 10%, ±10%인 경우의 차등폭은 20%이다.

□ 임금체계

▪ 기본급의 구성 형태

- ‘호봉급’은 호봉테이블에 따라 통상 매년 호봉이 상승함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능급’은 지무수행능력 단계별 임금액이 미리 결정되어 있고 통상 직무수행능력이 상승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급’은 직무별 그 가치에 따라 임금액이 미리 결정되어 있고 통상 직무가치가 높은 직무를 담당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직무수당은 제외한다.

- 기본급 구성내역에 포함되는 항목(호봉급, 직능급, 직무급)을 중복선택(C202)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조합은 다음과 같다.

	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무체계	X	X	X
순수호봉급	O	X	X
순수직능급	X	O	X
순수직무급	X	X	O
호봉-직능급	O	O	X
호봉-직무급	O	X	O
직능-직무급	X	O	O
호봉-직능-직무급	O	O	O

따라서 호봉급에 관련한 문항(C204, C205, C206)은 위의 기본급의 구성 형태 중 순수호봉급, 호봉-직능급, 호봉-직무급, 호봉-직능-직무급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응답한다.
직능급에 관련한 문항(C208, C209, C210)은 위의 기본급의 구성 형태 중 순수직능급, 호봉-직능급, 직능-직무급, 호봉-직능-직무급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응답한다.
직무급에 관련한 문항(C208, C209, C210)은 위의 기본급의 구성 형태 중 순수직무급, 호봉-직무급, 직능-직무급, 호봉-직능-직무급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응답한다.

▪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지급방식 중의 하나로써,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의 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금지급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성과배분

▪ 고정・변동 상여금의 지급기준 설명

<table>
<tr><td colspan="3">정액급여</td><td rowspan="2">초과급여</td><td colspan="2">상여금(특별급여)</td></tr>
<tr><td>기 본 급
(호봉,직능,직무급 등)</td><td>통 상 적 수 당
(정기·일률적 지급)</td><td rowspan="2">기타
수당</td><td>고 정
상여금</td><td rowspan="2">변 동
상여금</td></tr>
<tr><td colspan="2">통 상 임 금</td><td>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td></tr>
</table>

- 기본급 : 정상 노동시간 내의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시간당 또는 월당(月當) 임금. 기본급은 본인급·능력급·근속급으로 구성되므로 가족급·지역급·임시상여·시간외 임금과 같은 여러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액급여 : 근로계약, 근로협약, 사업체의 급여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지급액, 지급조건, 산정방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정액급여는 기본급(월급, 일급, 시급), 연령급, 근속급, 능률급, 가족수당, 직무수당, 물가수당, 통근수당, 유급 휴가급여 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초과급여 : 정상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되는 급여로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당・일직수당, 심야근로수당 등을 말한다.
- 상여금(특별급여) : 급여지급 관계규정과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한다.

▪ 기타 성과배분 제도

- 우리사주제 : 기업이 자사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게 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의 소유참여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 스톡옵션제도 :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 임금수준 및 인상

▪ 군필 고졸/대졸 남성 정규직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

연봉으로 환산하여 세전 기준이며, 해당 사원이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 과장 1년차 평균임금/ 부장 1년차 평균임금

WPS2009와 WPS2007 조사에서는 WPS2005와 달리 직급별 임금의 차이를 조사에 포함하였다. 이는 연봉으로 환산한 세전 기준의 임금이다.

▪ 임금피크제

특정 연령, 예를 들어 50대 중후반 이후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D.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 인사관리 전반

▪ 인사업무

사업장의 임금체계, 성과배분, 근무평정, 작업조직, 근로시간 등의 제반사항을 다루는 업무를 의미한다.

▪ 노무업무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조직과 임금·단체교섭의 진행과 단체협약의 체결, 노동쟁의에 대한 대응 등 근로자대표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처리하는 업무를 지칭한다.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위해 근로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노동쟁의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업무를 의미한다.

▪ 직무분석

'직무분석'이란 직무에 포함되는 일의 성질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적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의미한다.

▪ 인사부서의 역할

D121-126은 인사부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기업의 규모나 인사부서의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 상태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 작업조직

▪ 식스시그마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21세기형 기업경영전략이다. 식

스시그마 운동은 제품설계, 제조, 서비스 품질 불량을 최소화해 규격상한과 하한이 목표로 정한 품질중심으로부터 6시그마 거리에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식스 시그마 품질수준은 1백만 개 제품 중 불량이 3.4개 이내이다.

- 소집단활동

  고객만족, 서비스나 품질개선, 비용절감, 납기준수, 제품개발이나 제품수정 등 업무관련 개선을 위한 팀, 위원회 테스크포스(TFT) 등 업무관련 개선을 위해 직장에 소인원의 그룹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목표나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신입사원이 능숙한 재직자만큼 일하기 위해 소용되는 기간

  0년 0개월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운수회사, 학교, 병원 등의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면허나 자격이 있으면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이다.

- 업무 로테이션

  배치전환에 의한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종업원의 직무영역을 변경시켜 다방면의 경험, 지식 등을 쌓게하는 인재양성제도이다. 즉 현재 담당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 다기능 교육훈련

  '다기능 교육훈련'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 직접부문

  간접부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간접부문이 본사업무, 지원부문, 행정인력을 뜻하는 반면 직접부문은 현장업무, 생산부문, 제조인력 또는 영업인력을 의미한다.

- 보전업무

  기계 및 설비 등이 생산 및 영업활동에 차질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온전하게 잘 유지시키는 업무를 의미한다.

□ 근로시간

▪ 주 5일제

주40시간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근무제의 시행 단계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인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단계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3단계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된다. 4단계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5단계인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마지막 6단계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 선택적 근무시간제

오전 8시~ 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또는 오전 10시~ 오후7시 등으로 근무시간 선택 대안 중에 1가지를 선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 탄력적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로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처벌이나 가산임금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이다.

E. 인적자원개발

□ 교육훈련

'교육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계획되고 구조화되어 작업장내 또는 작업장 밖(강의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에는 직업훈련, 산업안전교육, 노사관계 교육, 팀웍 형성을 위한 조직개발 활동, 개인의 학원 대학(대학원) 수강료 지원 등 기업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교육훈련이 포함된다. 그러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이나 단순히 동료나 선배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현장훈련은 제외된다.

□ 경력개발

▪ 경력개발 프로그램

회사에서 개별 직원들이 경력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평가센터법 : 다수의 평가자가 시뮬레이션, 역할연기, 인터뷰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
- 경력 카운슬링 : 직원의 경력 욕구를 파악하고 조언을 해주는 제도
- 멘토링제도 : 신입직원들의 조직 적응력과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선임직원이 조언을 해주기 위한 제도
- 경력 워크숍 : 직원의 경력 욕구를 파악하고 경력 설계를 하기 위해 개최되는 워크숍
- 승계계획: 중요한 직위가 공석일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승계자를 지정하는 제도
- 전직지원서비스
  퇴직에 직면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예를 들어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회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 사내공모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내 희망자들을 공개 모집하여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제도

F. 기업복지 및 산업재해

□ 기업복지

▪ 퇴직금 제도
- 누진율 : 퇴직금 최저지급한도를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비례적)으로 퇴직금 지급률이 증가하도록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정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퇴직보험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보험회사 등의 기관에 미리 적립해 두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 퇴직연금제도

- 2005년 12월부터는 사용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현행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제도를 이에 상응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더라도 퇴직시 급여의 지급은 현행의 일시금 형태와 도입한 연금 형태 모두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 퇴직시 최종 퇴직연금의 급여액이 미리 확정(예: X개월분의 최종임금)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형태이다.
- 확정기여형 : 최종 급여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매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미리 확정(예: 월급여의 X%)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형태이다.
- 개인퇴직계좌 제도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퇴직시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선택적 복지제도

다양한 복지제도의 종류 가운데 근로자 개인이 각자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복지제도의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카페테리아 플랜이라고도 한다.

□ 산업재해

▪ 원직복귀 : 원무복귀와 하향배치전환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 원무복귀 : 산재발생 이전과 동일한 기업의 직위와 직무에 복귀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직위 및 직무에 배치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하향배치전환 : 산재발생 이전에 수행하던 직위나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직위로의 이동 내지 다른 직무의 수행을 의미한다.

▪ 사내보장

기업의 자발적인 복리조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사내보장 차원에서 산재근로자에게 보

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산재근로자는 여전히 회사에 대하여 '개인배상책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보장을 받은 근로자가 개인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면, 이 경우 사내보장은 개인배상책임에 해당된다.

IR. 비정규직법 관련 부가조사

□ 기간제(계약직 등)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갱신을 통하여 고용 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자로 파트타임(단시간)근로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 일자리 개념

IR 102~IR 109 문항은 근로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질문이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수의 개념과 근로자 수의 개념은 서로 다른 것으로, 기간제 고용인이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만 일자리 수는 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예시를 참고.

2005년 말	2007년 말	응답예시
기간제 일자리 20개	20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가 회사를 그만둠	기간제 일자리 20개가 남아있음.
기간제 일자리 20개	1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의 정규직으로 전환됨	기간제 일자리 10개가 남아있음.
기간제 일자리 20개	1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업무의 정규직으로 전환됨.	기간제 일자리 20개가 남아있음.
기간제 일자리 20개	10개의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업무의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기간제 근로자를 새롭게 10명을 채용함.	기간제 일자리 20개가 남아있음.
기간제 일자리 20개	10개의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업무의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기간제 근로자를 새롭게 20명을 채용함.**	기간제 일자리 20개가 남아있음.

** 2005년말 이후부터 2007년 말 이후까지 새롭게 창출된 기간제 일자리는 응답에서 제외 된다. **따라서, 2007년 말의 기간제 일자리 수는 2005년 말에 응답한 기간제 일자리 수보다 클 수 없다.**

H. 작업장 혁신

□ WPS 2007에서 특별조사로 추가된 작업장 혁신은 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이다. WPS 2009에서는 일부 문항을 본조사에 설문하였다.

Z. 공공부문(추가설문)

□ Z035 문항과 Z036 문항은 응답자에게 설문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따라 사후 입력하는 변수이다. WPS 2007에서만 제공된다.

▪ Z036 문항에서 ⑨⑦ 해당없음 응답의 경우, 2005년 조사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조사되었으나 2007년 조사에서 공공기관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명시한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되었다.

3 노무담당자 응답용 설문

M. 노사관계(유노조 사업장)

※ M001에서 노동조합이 없거나 휴면노조인 경우, 그리고 N001에서 노사협의회가 없다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다.

□ 노무부서 현황

- 노사관계 업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조직과 임금 단체교섭의 진행과 단체협약의 체결, 노동쟁의에 대한 대응 등 근로자대표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 현장관리자

  조장, 반장, 계장, 과장 등 최하위 조직 단위의 감독자를 지칭한다.

□ 노동조합 현황

- 조직형태
  - 기업별 노조 : 기업단위로 결성한 노동조합
  - 산업별 노조 : 동일산업에 속하는 노동자를 숙련도나 직종과 관계없이 조직하는 노동조합
  - 지역별 노조 : 지역단위로 결성한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 임금 및 단체교섭

▪ 유니온 숍

사내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노조가입 강제 제도를 의미한다.

▪ 초기업단위 교섭

CAPI에 의한 시스템적 오류 경고와 데이터 리체크 과정에서의 검증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라고 응답하면서, 동시에 초기업단위 교섭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그 응답값을 인정하였다.

□ 노동쟁의

▪ 무노동무임금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파업횟수와 파업일수

파업의 횟수는 부분파업을 포함하여, 불연속적 파업행위를 각각 1회로 간주했으며, 부분파업의 경우 파업일수를 산정할 때, 전체 파업시간 즉 각각의 부분파업시간의 합계를 일노동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일(day)단위로 표현하였다.

□ 경영참여

▪ 노사간 쟁점이 되었던 주요 경영 현안

노사간 쟁점이 되었던 주요 경영 현안 두 가지를 선택하는 질문(M514)과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 반영정도를 묻는 질문(M515, M516)의 경우 M514에서 응답한 값이 작은 번호가 M515의 응답기준이 되고, 응답 값이 큰 번호는 M516의 응답기준이 된다.

□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N. 노사관계(무노조 사업장)

※ M001에서 노동조합이 없거나 휴면노조인 경우, 그리고 N001에서 노사협의회가 없다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다.

□ 기본사항

▪ 노사협의회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다.

▪ 근로자대표조직 : 근로자를 대표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해 회사측과 교섭을 벌이거나 협의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 노사협의회 운영 및 임금결정

▪ 노동쟁의 형태

- 파업 : 근로자단체의 통제 아래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태업 : 근로자단체의 통제 아래 고의로 기계설비를 파괴하거나 불량품을 생산하며, 또는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 보이콧(불매운동) : 근로자단체의 통제 아래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 관계가 있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 준법투쟁 : 근로자집단의 통제 아래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규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근로자대표 응답용 설문

P. 노사관계(노동조합 대표 응답용)

- P는 노무담당자 응답용 설문 M(유노조사업장)을 참조

▪ 노사간 쟁점이 되었던 주요 경영 현안

노사간 쟁점이 되었던 주요 경영 현안 두 가지를 선택하는 질문(M514)과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 반영정도를 묻는 질문(M515, M516)의 경우 M514에서 응답한 값이 작은 번호가 M515의 응답기준이 되고, 응답 값이 큰 번호는 M516의 응답기준이 된다.

▪ 조합원 수(P120)

본조사에서 조합원 수를 묻는 문항은 근로자현황 조사표에서 EP07038과 E07138의 합과 P120 두개이다. 이 두 문항의 응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P120는 가장 조합원수가 많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묻는 문항이고, EP07038과 EP07138의 합은 가장 조합원수가 많은 노조를 포함한 사업체 내의 모든 노조의 조합원 수를 묻는 문항이기 때문이다.

Q. 노사관계(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응답용)

- Q는 노무담당자 응답용 설문 N(무노조사업장)을 참조

▪ 사업장 설립년도 및 노동조합 결성년도

노동조합 결성년도(P116)가 사업장 설립년도(A203) 보다 늦은 경우는 사업장이 인수, 합병 등의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응답 값을 인정하였다.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A 농업 및 임업	
01 농업	02 임업
B 어업	
05 어업	
C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1 금속 광업
12 비금속 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D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6 담배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F 건설업	
45 종합 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 ; 자동차 제외	
H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상 운송업
62 항공 운송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J 통신업	
64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M 사업 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 교육 서비스업	
80 교육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A 농업 및 임업	
01 농업	02 임업
03 어업	
B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D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 수도사업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 자동차 제외	
H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69 임대업 ; 부동산 제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복지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1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	02 행정 및 경영 관리자
03 일반관리자	
1 전문가	
11 과학전문가	12 컴퓨터관련 전문가
13 공학 전문가	14 보건의료 전문가
15 교육 전문가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21 과학관련 기술 종사자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3 공학관련 기술 종사자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25 교육 준전문가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29 기타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31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41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42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43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44 보안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52 통신 판매 종사자
53 모델 및 홍보 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업 숙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3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82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83 조립 종사자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91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4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A 군인	
A1 군인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1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전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4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직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자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A 군인	
A1 군인	